

**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**
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7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9.

발 의 자 : 위성곤 · 허 영 · 임오경
윤준병 · 박희승 · 박지혜
박정현 · 문대림 · 서영교
김한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국토계획법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준공까지 마무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, 그 전에는 사업부지를 매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.

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체류형 치유 의료 관광의 핵심사업인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초기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 및 사업포기로 인하여 개발 도중 중단된 채 14년째 표류하여,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(JDC)가 해당부지를 다시 사들여 찾아왔으나, 개발 완료 전까진 부지를 신규투자자에게 매각·분양·임대할 수 없는 탓에 신규 투자 유치 및 사업 정상화에 곤란을 겪는 상황임.

이에 공공시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제자

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점사업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406조제3항 및 제4항).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주자치도에 설치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 중 유원지가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인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「관광진흥법」 제59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토지 또는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을 매수·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에 관한 권리·의무를 승계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0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조성한 토지 또는

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한 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6조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) ① · ② (생 략)	제406조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<u>제주자치도에 설치하는 도 시 ·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가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인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「관광 진흥법」 제59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토지 또는 설치된 시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 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 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④ <u>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 설을 매수 · 임차하거나 그 경 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에 관한 권리 · 의무를 승 계한다.</u>
③ ~ ⑨ (생 략)	⑤ ~ ⑪ (현행 제3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)